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1465호 2023년 5월 4일(목)

조 례

○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2

○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청초호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4

공 고

○ 속초시 가로등 현수기 확대(민간) 운영 계획 공고 ····· 24

입법예고

○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8

○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32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00호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속초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으로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3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5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4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바닥면 가로 2,3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700mm × 세로 600mm

나. 색 상 : 하늘색(바닥면), 흰색(글자, 문양)

2. 도안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큰나무' 심볼 삽입)

가. 바닥면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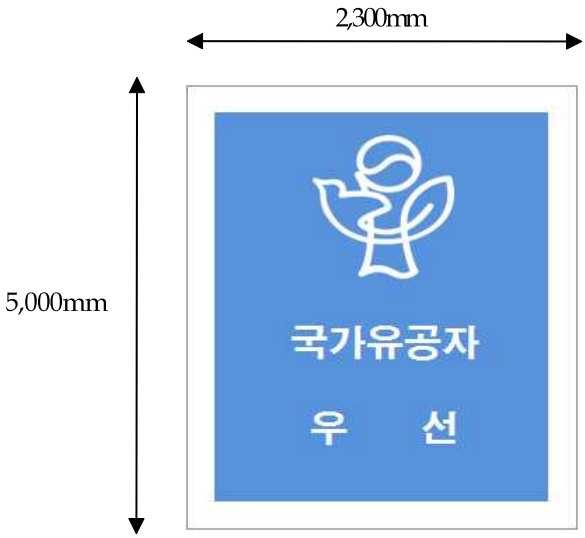

나. 안내표지판

※ 우선주차구역 조성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안내표지판 설치는 생략할 수 있음

〔별표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제5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 115mm × 세로 115mm

나. 색 상 : 살구색(바탕면), 검정색(글자)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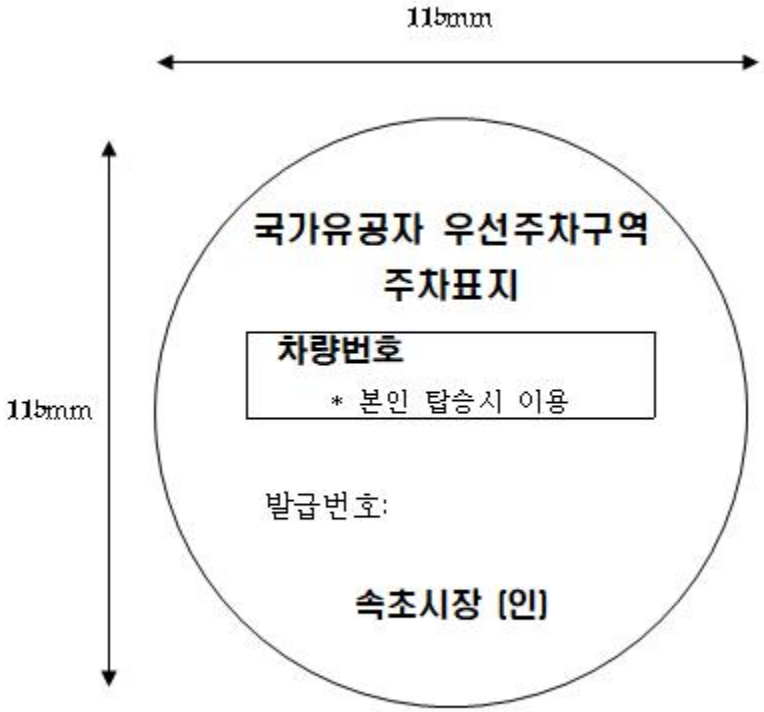

〔별지〕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국가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보훈번호	
	주 소			
자 동 차	소유자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종/차명	
재발급 사유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보훈번호, 차량번호 등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	**표지 폐기 시 까지**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01호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02호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를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

별표 1 중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1박당)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밖의 지역은 7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03호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자격은 신청일 현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를 “자격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속초시립풍물단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6조제2항 중 “단장이 미리 지정한 단원”을 “악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당만”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질병 또는 사회적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6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비상임단원 수당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수 당	비 고
악 장	1,000,000	1개월
수석단원	800,000	〃
단 무 장	600,000	〃
단 원	600,000	〃

속초시 고시 제2023-57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청초호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청초호유원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미래전략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5월 4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가. 공간시설
1)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④	청초호유원지	강원도 속초시 교동, 조양동	339,780	-	339,780	1993.8.17 (강고 제93-94호)	

2.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
가.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시설 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339,780.0	339,780.0	-	68,162	**68,879**	**증) 717**	394,205	**395,579**	**증)1,374**		건폐율: 20.27% 용적률: 116.42%
소계	휴양 및 편익시설지		10,308.9	10,308.9	-	1,960	1,960	-	9,800	9,800	-		
1	휴양 및 편익시설	1544-4	10,308.9	10,308.9	-	1,960	1,960	-	9,800	9,800	-	5층	

시설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소계	운동시설지		2,619.9	2,619.9	-	520	520	-	2,600	2,600	-		
2	운동시설	1555-2	2,619.9	2,619.9	-	520	520	-	2,600	2,600	-	5층	
소계	유희 및 편익시설지		3,298.8	**6,472.8**	**증)3,174**	650	650	-	3,250	3,250	-		
3 → 3-1	유희 및 편익시설	1555-1	3,298.8	3,298.8	-	650	650	-	3,250	3,250	-	5층	시설번호 변경
3-2	유희 및 편익시설	1025-1	-	**3,174.0**	**증)3,174**	-	-	-	-	-	-		어린이 물놀이 시설 (신설)
소계	휴양시설지		49,392.8	49,392.8	-	20,127	20,127	-	170,339	170,339	-	12층	
4-1	휴양시설	1024-1	17,108.6	17,108.6	-	5,890	5,890	-	70,680	70,680	-	12층	
4-2	휴양시설	1557-1	11,433.3	11,433.3	-	5,700	5,700	-	39,900	39,900	-	7층	
4-3	휴양시설	1020-4	658.3	658.3	-	296	296	-	2,072	2,072	-	7층	
4-4	휴양시설	1020-5	639.0	639.0	-	287	287	-	2,009	2,009	-	7층	
4-5	휴양시설	1019-6	594.3	594.3	-	267	267	-	1,869	1,869	-	7층	
4-6	휴양시설	1019-7	594.6	594.6	-	267	267	-	1,869	1,869	-	7층	
4-7	휴양시설	1019-8	594.6	594.6	-	267	267	-	1,869	1,869	-	7층	
4-8	휴양시설	1019-15	594.1	594.1	-	267	267	-	1,869	1,869	-	7층	
4-9	휴양시설	1019-16	594.1	594.1	-	267	267	-	1,869	1,869	-	7층	
4-10	휴양시설	1019-17	594.2	594.2	-	267	267	-	1,869	1,869	-	7층	
4-11	휴양시설	1554-1	735.1	735.1	-	330	330	-	2,310	2,310	-	7층	
4-12	휴양시설	1554-4	737.6	737.6	-	331	331	-	2,317	2,317	-	7층	
4-13	휴양시설	1554-2	734.4	734.4	-	330	330	-	2,310	2,310	-	7층	
4-14	휴양시설	1554-3	737.8	737.8	-	332	332	-	2,324	2,324	-	7층	
4-15	휴양시설	1554-5	841.7	841.7	-	378	378	-	2,646	2,646	-	7층	
4-16	휴양시설	1553-1	727.8	727.8	-	327	327	-	2,289	2,289	-	7층	
4-17	휴양시설	1553-4	742.2	742.2	-	333	333	-	2,331	2,331	-	7층	
4-18	휴양시설	1553-2	748.0	748.0	-	336	336	-	2,352	2,352	-	7층	
4-19	휴양시설	1553-3	1,626.8	1,626.8	-	731	731	-	5,117	5,117	-	7층	미르
4-20	휴양시설	1553-5											

시설 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4-21	휴양시설	1558-2	4,928.0	4,928.0	-	1,724	1,724	-	12,068	12,068	-	7층	
4-22	휴양시설	1558-3	3,428.3	3,428.3	-	1,200	1,200	-	8,400	8,400	-	7층	
소 계	특수시설지		2,660.0	2,660.0	-	502	502	-	502	502	-		
5-1	특수시설	1544-2	300.0	300.0	-	-	-	-	-	-	-		조각시설
5-2	특수시설	1544-2	1,110.0	1,110.0	-	160	160	-	160	160	-	1층	야외 음악당
5-3	특수시설	1025-1	1,250.0	1,250.0	-	342	342	-	342	342	-		
소 계	특수 및 편익시설지		35,342.0	35,342.0	-	8,250	8,250	-	41,250	41,250	-		
6-1	특수 및 편익시설	1546-1	14,325.4	14,325.4	-	2,480	2,480	-	12,400	12,400	-	5층	
6-2	특수 및 편익시설	1544-5	5,129.6	5,129.6	-	1,000	1,000	-	5,000	5,000	-	5층	마리나 활성화 관련시설
6-3	특수 및 편익시설	1545-1	15,887.0	15,887.0	-	4,770	4,770	-	23,850	23,850	-	5층	
소 계	편익시설지		84,132.8	**86,322.8**	**증)2,190**	35,883	**36,540**	**증)657**	166,194	**167,508**	**증)1,314**		
7-1	편익시설	1019-1	446.0	446.0	-	223	223	-	1,115	1,115	-	5층	
7-2	편익시설	1019-2	435.8	435.8	-	218	218	-	1,090	1,090	-	5층	
7-3	편익시설	1019-3	436.1	436.1	-	218	218	-	1,090	1,090	-	5층	
7-4	편익시설	1019-4	435.8	435.8	-	218	218	-	1,090	1,090	-	5층	
7-5	편익시설	1019-5	435.9	435.9	-	218	218	-	1,090	1,090	-	5층	
7-6	편익시설	1019-10	406.5	406.5	-	203	203	-	1,015	1,015	-	5층	
7-7	편익시설	1019-11	434.8	434.8	-	217	217	-	1,085	1,085	-	5층	
7-8	편익시설	1019-12	435.5	435.5	-	218	218	-	1,090	1,090	-	5층	
7-9	편익시설	1019-13	435.5	435.5	-	218	218	-	1,090	1,090	-	5층	
7-10	편익시설	1019-14	435.6	435.6	-	218	218	-	1,090	1,090	-	5층	
7-11	편익시설	1019-9	487.9	487.9	-	244	244	-	1,220	1,220	-	5층	
7-12	편익시설	1019-18	336.6	336.6	-	168	168	-	840	840	-	5층	
7-13	편익시설	1021-1	320.7	320.7	-	160	160	-	800	800	-	5층	
7-14	편익시설	1021-2	337.5	337.5	-	169	169	-	845	845	-	5층	
7-15	편익시설	1021-3	337.9	337.9	-	169	169	-	845	845	-	5층	
7-16	편익시설	1021-4	338.0	338.0	-	169	169	-	845	845	-	5층	
7-17	편익시설	1021-5	338.9	338.9	-	169	169	-	845	845	-	5층	
7-18	편익시설	1021-6	339.4	339.4	-	170	170	-	850	850	-	5층	
7-19	편익시설	1021-7	339.6	339.6	-	170	170	-	850	850	-	5층	

시설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7-20	편익시설	1021-8	340.1	340.1	-	170	170	-	850	850	-	5층	
7-21	편익시설	1021-9	340.7	340.7	-	170	170	-	850	850	-	5층	
7-22	편익시설	1021-10	324.6	324.6	-	162	162	-	810	810	-	5층	
7-23	편익시설	1021-11	288.7	288.7	-	144	144	-	720	720	-	5층	
7-24	편익시설	1021-12	337.5	337.5	-	169	169	-	845	845	-	5층	
7-25	편익시설	1021-13	338.1	338.1	-	169	169	-	845	845	-	5층	
7-26	편익시설	1021-14	338.2	338.2	-	169	169	-	845	845	-	5층	
7-27	편익시설	1021-15	339.1	339.1	-	170	170	-	850	850	-	5층	
7-28	편익시설	1021-16	339.8	339.8	-	170	170	-	850	850	-	5층	
7-29	편익시설	1021-17	339.9	339.9	-	170	170	-	850	850	-	5층	
7-30	편익시설	1021-18	340.4	340.4	-	170	170	-	850	850	-	5층	
7-31	편익시설	1021-19	341.0	341.0	-	171	171	-	855	855	-	5층	
7-32	편익시설	1021-20	336.9	336.9	-	168	168	-	840	840	-	5층	
7-33	편익시설	1023-1	326.0	326.0	-	163	163	-	815	815	-	5층	
7-34	편익시설	1023-2	336.3	336.3	-	168	168	-	840	840	-	5층	
7-35	편익시설	1023-3	673.2	673.2	-	336	336	-	1,680	1,680	-	5층	
7-36	편익시설	1023-8											
7-37	편익시설	1023-4	336.4	336.4	-	168	168	-	840	840	-	5층	
7-38	편익시설	1023-5	330.8	330.8	-	165	165	-	825	825	-	5층	
7-39	편익시설	1023-6	327.6	327.6	-	164	164	-	820	820	-	5층	
7-40	편익시설	1023-7	336.5	336.5	-	168	168	-	840	840	-	5층	
7-41	편익시설	1023-9	336.3	336.3	-	168	168	-	840	840	-	5층	
7-42	편익시설	1023-10	331.3	331.3	-	166	166	-	830	830	-	5층	
7-43	편익시설	1541-1	12,310.5	12,310.5	-	4,300	4,300	-	21,500	21,500	-	5층	
7-44	편익시설	1542-1	361.0	361.0	-	181	181	-	543	543	-	3층	
7-45	편익시설	1542-4	357.0	357.0	-	179	179	-	537	537	-	3층	
7-46	편익시설	1542-5	399.2	399.2	-	200	200	-	600	600	-	3층	
7-47	편익시설	1542-8	366.9	366.9	-	183	183	-	549	549	-	3층	
7-48	편익시설	1542-9	367.1	367.1	-	184	184	-	552	552	-	3층	
7-49	편익시설	1542-12	472.1	472.1	-	236	236	-	708	708	-	3층	
7-50	편익시설	1542-2	280.5	280.5	-	140	140	-	420	420	-	3층	
7-51	편익시설	1542-3	267.1	267.1	-	134	134	-	402	402	-	3층	
7-52	편익시설	1542-6	377.3	377.3	-	189	189	-	567	567	-	3층	
7-53	편익시설	1542-7	367.2	367.2	-	184	184	-	552	552	-	3층	

시설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7-54	편익시설	1542-10	367.6	367.6	-	184	184	-	552	552	-	3층	
7-55	편익시설	1542-11	501.2	501.2	-	251	251	-	753	753	-	3층	
7-56	편익시설	1543-1	1,683.5	1,683.5	-	842	842	-	3,368	3,368	-	4층	
7-57	편익시설	1543-2	466.6	466.6	-	233	233	-	932	932	-	4층	
7-58	편익시설	1543-3	387.6	387.6	-	194	194	-	776	776	-	4층	
7-59	편익시설	1543-4	496.2	496.2	-	248	248	-	992	992	-	4층	
7-60	편익시설	1547-1	442.4	442.4	-	221	221	-	884	884	-	4층	
7-61	편익시설	1547-4	459.8	459.8	-	230	230	-	920	920	-	4층	
7-62	편익시설	1547-5	459.3	459.3	-	230	230	-	919	919	-	4층	
7-63	편익시설	1547-8	458.9	458.9	-	229	229	-	916	916	-	4층	
7-64	편익시설	1547-9	453.4	453.4	-	227	227	-	908	908	-	4층	
7-65	편익시설	1550-1	403.0	403.0	-	202	202	-	808	808	-	4층	
7-66	편익시설	1550-4	776.3	776.3	-	388	388	-	1,552	1,552	-	4층	
7-67	편익시설	1550-5											
7-68	편익시설	1550-8	387.5	387.5	-	194	194	-	776	776	-	4층	
7-69	편익시설	1550-9	392.3	392.3	-	196	196	-	784	784	-	4층	
7-70	편익시설	1551-1	414.2	414.2	-	207	207	-	828	828	-	4층	
7-71	편익시설	1551-4	419.5	419.5	-	210	210	-	840	840	-	4층	
7-72	편익시설	1551-5	419.1	419.1	-	210	210	-	840	840	-	4층	
7-73	편익시설	1551-8	418.7	418.7	-	209	209	-	836	836	-	4층	
7-74	편익시설	1551-9	411.8	411.8	-	206	206	-	824	824	-	4층	
7-75	편익시설	1547-2	443.4	443.4	-	222	222	-	1,110	1,110	-	5층	
7-76	편익시설	1547-3	460.0	460.0	-	230	230	-	1,150	1,150	-	5층	
7-77	편익시설	1547-6	459.5	459.5	-	230	230	-	1,150	1,150	-	5층	
7-78	편익시설	1547-7	459.1	459.1	-	230	230	-	1,150	1,150	-	5층	
7-79	편익시설	1547-10	441.8	441.8	-	221	221	-	1,105	1,105	-	5층	
7-80	편익시설	1550-2	394.7	394.7	-	197	197	-	985	985	-	5층	
7-81	편익시설	1550-3	388.4	388.4	-	194	194	-	970	970	-	5층	
7-82	편익시설	1550-6	387.8	387.8	-	194	194	-	970	970	-	5층	
7-83	편익시설	1550-7	387.3	387.3	-	194	194	-	970	970	-	5층	
7-84	편익시설	1550-10	382.0	382.0	-	191	191	-	955	955	-	5층	
7-85	편익시설	1551-2	411.7	411.7	-	206	206	-	1,030	1,030	-	5층	
7-86	편익시설	1551-3	419.5	419.5	-	210	210	-	1,050	1,050	-	5층	
7-87	편익시설	1551-6	838.1	838.1	-	419	419	-	2,095	2,095	-	5층	㈜청초수
7-88	편익시설	1551-7											

시설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7-89	편익시설	1551-10	400.9	400.9	-	200	200	-	1,000	1,000	-	5층	
7-90	편익시설	1548-1	433.4	433.4	-	217	217	-	1,085	1,085	-	5층	
7-91	편익시설	1548-4	452.2	452.2	-	226	226	-	1,130	1,130	-	5층	
7-92	편익시설	1548-5	452.3	452.3	-	226	226	-	1,130	1,130	-	5층	
7-93	편익시설	1548-8	452.3	452.3	-	226	226	-	1,130	1,130	-	5층	
7-94	편익시설	1548-9	437.9	437.9	-	219	219	-	1,095	1,095	-	5층	
7-95	편익시설	1549-1	380.0	380.0	-	190	190	-	950	950	-	5층	
7-96	편익시설	1549-4	392.3	392.3	-	196	196	-	980	980	-	5층	
7-97	편익시설	1549-5	392.4	392.4	-	196	196	-	980	980	-	5층	
7-98	편익시설	1549-8	392.5	392.5	-	196	196	-	980	980	-	5층	
7-99	편익시설	1549-9	375.5	375.5	-	188	188	-	940	940	-	5층	
7-100	편익시설	1552-1	406.1	406.1	-	203	203	-	1,015	1,015	-	5층	
7-101	편익시설	1552-4	414.3	414.3	-	207	207	-	1,035	1,035	-	5층	
7-102	편익시설	1552-5	414.3	414.3	-	207	207	-	1,035	1,035	-	5층	
7-103	편익시설	1552-8	414.2	414.2	-	207	207	-	1,035	1,035	-	5층	
7-104	편익시설	1552-9	421.9	421.9	-	211	211	-	1,055	1,055	-	5층	
7-105	편익시설	1548-2	415.5	415.5	-	208	208	-	832	832	-	4층	
7-106	편익시설	1548-3	452.3	452.3	-	226	226	-	904	904	-	4층	
7-107	편익시설	1548-6	452.5	452.5	-	226	226	-	904	904	-	4층	
7-108	편익시설	1548-7	897.8	897.8	-	449	449	-	1,796	1,796	-	4층	
7-109	편익시설	1548-10											
7-110	편익시설	1549-2	390.7	390.7	-	195	195	-	780	780	-	4층	
7-111	편익시설	1549-3	392.1	392.1	-	196	196	-	784	784	-	4층	
7-112	편익시설	1549-6	392.1	392.1	-	196	196	-	784	784	-	4층	
7-113	편익시설	1549-7	392.1	392.1	-	196	196	-	784	784	-	4층	
7-114	편익시설	1549-10	383.4	383.4	-	192	192	-	768	768	-	4층	
7-115	편익시설	1552-2	836.8	836.8	-	418	418	-	1,672	1,672	-	4층	
7-116	편익시설	1552-11											
7-117	편익시설	1552-6	828.2	828.2	-	414	414	-	1,656	1,656	-	4층	
7-118	편익시설	1552-7											
7-119	편익시설	1552-10	423.2	423.2	-	212	212	-	848	848	-	4층	
7-120	편익시설	1556-1	436.1	436.1	-	87	87	-	261	261	-	3층	
7-121	편익시설	1556-2	434.9	434.9	-	87	87	-	261	261	-	3층	
7-122	편익시설	1556-3	434.0	434.0	-	87	87	-	261	261	-	3층	
7-123	편익시설	1556-4	506.3	506.3	-	101	101	-	303	303	-	3층	

시설 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7-124	편익시설	1556-5	506.3	506.3	-	101	101	-	303	303	-	3층	
7-125	편익시설	1544-1	7,579.5	7,579.5	-	800	800	-	4,000	4,000	-	15층	상징탑 H=72m
7-126	편익시설	1020-2	606.0	606.0	-	303	303	-	1,515	1,515	-	5층	
7-127	편익시설	1020-3	633.5	633.5	-	317	317	-	1,585	1,585	-	5층	
7-128	편익시설	1022-1	594.4	594.4	-	267	267	-	1,335	1,335	-	5층	
7-129	편익시설	1022-2	497.6	497.6	-	224	224	-	1,120	1,120	-	5층	
7-130	편익시설	1022-3	430.8	430.8	-	194	194	-	970	970	-	5층	
7-131	편익시설	1022-4	437.5	437.5	-	197	197	-	985	985	-	5층	
7-132	편익시설	1022-5	417.5	417.5	-	188	188	-	940	940	-	5층	
7-133	편익시설	1022-6	480.5	480.5	-	216	216	-	1,080	1,080	-	5층	
7-134	편익시설	1022-7	450.0	450.0	-	202	202	-	1,010	1,010	-	5층	
7-135	편익시설	1022-8	451.4	451.4	-	203	203	-	1,015	1,015	-	5층	
7-136	편익시설	1022-9	462.3	462.3	-	208	208	-	1,040	1,040	-	5층	
7-137	편익시설	1022-10	444.7	444.7	-	200	200	-	1,000	1,000	-	5층	
7-138	편익시설	1022-11	411.8	411.8	-	185	185	-	925	925	-	5층	
7-139	편익시설	1022-12	410.2	410.2	-	185	185	-	925	925	-	5층	
7-140	편익시설	1022-13	410.6	410.6	-	185	185	-	925	925	-	5층	
7-141	편익시설	1022-14	410.5	410.5	-	185	185	-	925	925	-	5층	
7-142	편익시설	1022-15	415.3	415.3	-	187	187	-	935	935	-	5층	
7-143	편익시설	1022-16	415.4	415.4	-	187	187	-	935	935	-	5층	
7-144	편익시설	1022-17	410.3	410.3	-	185	185	-	925	925	-	5층	
7-145	편익시설	1022-18	410.4	410.4	-	185	185	-	925	925	-	5층	
7-146	편익시설	1022-19	410.0	410.0	-	185	185	-	925	925	-	5층	
7-147	편익시설	1022-20	411.8	411.8	-	185	185	-	925	925	-	5층	
7-148	편익시설	1022-21	412.0	412.0	-	185	185	-	925	925	-	5층	
7-149	편익시설	1022-22	410.7	410.7	-	185	185	-	925	925	-	5층	
7-150	편익시설	1022-23	411.2	411.2	-	185	185	-	925	925	-	5층	
7-151	편익시설	1022-24	411.7	411.7	-	185	185	-	925	925	-	5층	
7-152	편익시설	1022-25	416.9	416.9	-	188	188	-	940	940	-	5층	
7-153	편익시설	1022-26	404.5	404.5	-	182	182	-	910	910	-	5층	
7-154	편익시설	1022-27	411.8	411.8	-	185	185	-	925	925	-	5층	
7-155	편익시설	1022-28	411.0	411.0	-	185	185	-	925	925	-	5층	
7-156	편익시설	1022-29	410.8	410.8	-	185	185	-	925	925	-	5층	
7-157	편익시설	1022-30	411.9	411.9	-	185	185	-	925	925	-	5층	

시설 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7-158	편익시설	1025-1	-	**2,190.0**	**증)2,190**	**-**	**657**	**증)657**	**-**	**1,314**	**증)1,314**	2층	영어도서관(신설)
소 계	관리시설지		74,928.3	74,928.3	-	-	-	-	-	-	-		
8-1	관리시설	1020-1	7,087.3	7,087.3	-	-	-	-	-	-	-		주차장
8-2	관리시설	1544-3	6,352.3	6,352.3	-	-	-	-	-	-	-		주차장
8-3	관리시설	1556-6	4,106.7	4,106.7	-	-	-	-	-	-	-		주차장
8-4	관리시설	1026-1 외	57,382.0	57,382.0	-	-	-	-	-	-	-		도로
소 계	기타시설지		77,096.5	**71,732.5**	**감)5,364**	270	**330**	**증)60**	270	**330**	**증)60**		
9-1	기타시설	1025-1	34,789.5	**29,425.5**	**감)5,364**	90	**150**	**증)60**	90	**150**	**증)60**	1층	**화장실 1개소 (증축)** 파고라 9개소 매점1개소
9-2	기타시설	1543-5	4,963.0	4,963.0	-	-	-	-	-	-	-		파고라 7개소
9-3	기타시설	1544-2	31,261.4	31,261.4	-	180	180	-	180	180	-	1층	화장실 2개소 파고라 11개소 매점2개소
9-4	기타시설	1556-7	1,238.0	1,238.0	-	-	-	-	-	-	-		완충녹지
9-5	기타시설	1558-1	1,505.3	1,505.3	-	-	-	-	-	-	-		완충녹지
9-6	기타시설	1559-3	3,339.3	3,339.3	-	-	-	-	-	-	-		호안

나.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세부시설	변경내용	변경사유
3-1	유희 및 편익시설	· 시설번호 변경 · 시설번호 : 기정 3 → 변경 3-1	· 시설번호 변경
3-2	유희 및 편익시설	· 시설면적 증가 (3-2 신설) · 위치 : 속초시 교동 1025-1번지 · 면적 : 3,174㎡	· 청초호유원지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유·아동들에게 휴양·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7-158	편익시설	· 시설면적 및 건축면적 증가 (7-158 신설) · 위치 : 속초시 교동 1025-1번지 · 면적 : 2,190㎡ · 건축면적 : 657㎡ · 건축연면적 : 1,314㎡ · 층수 : 2층	· 청초호유원지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독서활동을 증진시키고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함
9-1	기타시설	· 기타시설(9-1) 면적 감소 및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 · 면적 : 기정) 34,789.5㎡ 변경) 29,425.5㎡ (감)5,364㎡ · 건축면적 : 기정) 90㎡ 변경) 150㎡ (증)60㎡ · 건축연면적 : 기정) 90㎡ 변경) 150㎡ (증)60㎡	· 어린이 물놀이시설 및 영어도서관 조성에 따른 기타시설(9-1) 면적 감소 · 유원지 이용객의 편익도모를 위한 공중화장실 증축에 따른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증가

다. 기타사항

-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상 건축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 토지이용계획이 동일한 연접 2필지에 대하여 단일 개발을 허용하되, 각 부지 시설규모(건축면적, 건축연면적)의 합과 층수를 초과할 수 없음
- 마리나활성화 관련시설은 관계부서(관광과) 협의 필요

속초시 공고 제2023-470호

속초시 가로등 현수기 확대(민간) 운영 계획 공고

속초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 제4조(금지 또는 제한 등), 제6조(국가 등 광고물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제24조(표시금지지역·장소 또는 물건),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를 확대(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3일

속 초 시 장

1. 운영시기 : 2023. 5월 ~

2. 운영방법 : 신고(민간) 및 협의(국가 등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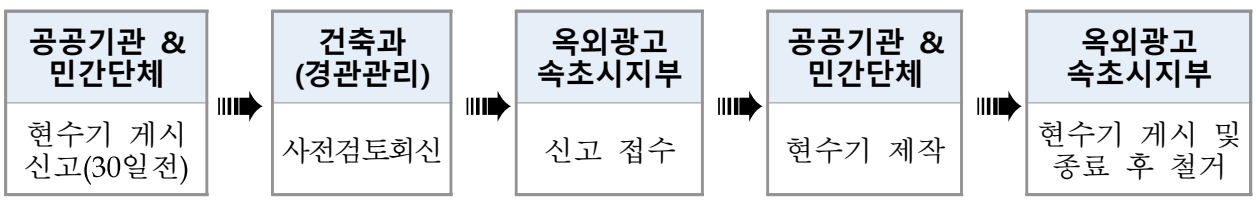

✓ **협의**(국가 등 공공기관) : 신고 **수수료 없음**, 대행수수료 **9,000**원/장

✓ **신고**(민간) : 신고 수수료 **3,000**원/장, 대행수수료 **9,000**원/장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현수막·벽보 지정게시대 업무 위·수탁 협약서 제1조 준용

3. 표시내용(시행령 제24조 제2항)

가.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나. 국가 등의 주요시책 등을 홍보

4. 표시 우선순위: 1개 구간내 신청자 단일화(공공·민간 포함)

가. 1순위: 국가 등의 시책

나. 2순위: 국가 등의 행사·공연 등

다. 3순위: 민간 행사·공연

5. 표시기간

가. 국가/자치단체 시책·행사·축제 등: 30일이내

나. 기타 공공기관 공연·행사 등: 15일이내(중복 신청 없을 시 15일 추가연장)

6. 신고제한사항

가. 불법가로등 현수기 적발시 과태료 부과(현수막에 준용)

나. 표시기준 미준수 가로등 현수기 즉시 철거

다. 관외 민간 공연·행사 등의 현수기 표시 불가

7. 접수 및 문의처

가. 접 수 처 : 속초시청 건축과 경관관리팀(☎033-639-1517)

나. 설치·철거 :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속초시지부(☎033-632-6627)

붙임 1. 수수료 및 과태료 부관기준 1부.

2. 가로등 현수기 설치규격 및 표시기준 1부.

붙임 1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고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장** 1,000원/장	

대행 수수료

광고물등	수수료	비고
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설치 및 철거**	 **9,000원/장**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2) 현수막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 수수료 및 과태료는 장당 금액임.

붙임 2 가로등 현수기 설치규격 및 표시기준

○ 현수기 1장 가로길이 60㎝ 이내, 세로길이 180㎝ 이내로 표시

※ 중앙로 현수기 1개(가로 60㎝×**세로 150㎝** 이내)

○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

○ 신호기와 비슷한 색상 또는 고채도 원색 사용 금지

○ 횡단보도 주변(10m), 주요 교차로 주변(20m) 가로등 제외

○ 터널 입구, 교통섬과 가각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 제외

○ 국경일 등 태극기 게양시, 현수기 설치 제한

○ 그밖의 표시방법은 시행령 제29조 5항에 따른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6. 21., 2016. 7. 6., 2020. 1. 7.>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20. 1. 7.>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속초시 공고 제2023-483호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으로 기 조성 또는 조성 예정인 주민통합 거점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 정립(안 제2조)

나. 주민통합 거점공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의 근거 조항 마련(안 제2조의2, 안 제2조의3)

다. 개정 형식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안 제4조, 안 제6조)

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안 제18조제1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미래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등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미래전략과
- 연락처 : 전화(033-639-2765), 팩스(033-635-8367)
  전자우편(venus072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미래전략과 도시재생팀(☎033-639-27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로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수익 허가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 활동
2. 지역홍보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활동
3. 주민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마을 환경개선 활동

4. 소득,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4조제1항 중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고 제2023-484호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진로교육법」을 근거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시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진로·진학·체험프로그램, 상담, 정보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등 진로교육 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속초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직장이 있는 청소년 및 시민지원 등 대상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5조)

마. 직접 또는 위탁운영 등 진로교육 사업의 추진 방법 마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교육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 반대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교육청소년팀)

2) 연락처 : 033-639-2049 (FAX 033-639-2059)

3) 전자메일 : youjini2@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팀 (033-639-20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진로정보”란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2.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 지원

3. 진로・진학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지원

4. 그 밖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속초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시장이 진로·진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진로・진학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조례명 :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